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19년6월10일

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[채권-파생형]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수익자 동의 관련 사항 변경

2 시행령개정사항반영 및 오기정정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수익자 동의 관련 사항 변경: 제42조 (신탁계약의 변경)	제42조 (신탁계약의 변경)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된 **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의 동의**를 받아야 한다. (이하 생략)	제42조 (신탁계약의 변경)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된 **수익증권 총좌수 전체의 동의**를 받아야 한다. (현행과 같음)
1. 수익자 동의 관련 사항 변경: 제43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제43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된 **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의 동의**를 받아야 한다. (이하 생략)	제43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된 **수익증권 총좌수 전체의 동의**를 받아야 한다. (현행과 같음)
1. 수익자 동의 관련 사항 변경: 제46조 (투자신탁의 합병)	제46조 (투자신탁의 합병)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행된 **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의 동의**를 받아야 한다. (이하 생략)	제46조 (투자신탁의 합병)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행된 **수익증권 총좌수 전체의 동의**를 받아야 한다. (현행과 같음)
2. 시행령개정사항반영 및 오기정정 : 제2조 (용어의 정의)	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"집합투자"라 함은 **2인 이상의 투자자<신설>**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/처분,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. (이하 생략)	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"집합투자"라 함은 **2인 이상의 투자자(또는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)**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/처분,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. (현행과 같음)
2. 시행령개정사항반영 및 오기정정 : 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등)	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등) ①~②(생략)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**다른 집합투자기구<신설>**가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(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)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. (이하 생략)	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등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**다른 집합투자기구(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)**가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(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)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. (현행과 같음)
2. 시행령개정사항반영 및 오기정정 : 제8조 (신탁금의 납입)	제8조 (신탁금의 납입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**현금 또는 수표로**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시행령 제271조의11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권,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**현금 또는 수표로**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시행령 제271조의11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권,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	제8조 (신탁금의 납입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**금전으로**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시행령 제271조의11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권,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**금전으로**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시행령 제271조의11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권,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(현행과 같음)
2. 시행령개정사항반영 및 오기정정 : 제15조 (자산운용지시 등)	제15조 (자산운용지시 등) ①(생략)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•처분 등을 한 경우 **그 투자신탁재산으로**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	제15조 (자산운용지시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•처분 등을 한 경우 **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**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현행과 같음)
2. 시행령개정사항반영 및 오기정정 : 제23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	제23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**①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** **1.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** **2.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** **② 신탁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**	제23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**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7조의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기준가격 산정 시 이를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** **1.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** **2.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**
2. 시행령개정사항반영 및 오기정정 : 제41조 (기타 운용비용 등)	제41조 (기타 운용비용 등) ①(생략) ② 제1항에서 "비용"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.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.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4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**<신설>** (이하 생략)	제41조 (기타 운용비용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서 "비용"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.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.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4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**(단,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)** (현행과 같음)

2. 시행령개정사항반영 및 오기정정 : 제44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제44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(생략)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.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**<신설>**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4. 법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	제44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(현행과 같음)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.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**법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**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4. 법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